

IFRS in Focus

보험계약

요점

- 보험계약 의무를 인식하기 위하여 제안된 '구성요소(building block)' 접근법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접근법 및 측정방법과 매우 다르다.
-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한 구성요소로 확률가중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 할인율, 불확실성과 미래 이익에 대한 위험 조정(risk adjustment), 잔여마진(residual margin)의 3가지가 있다.
- 보험자는 각 구성요소에 대한 적절한 추정치를 결정하기 위해 보험자 자신의 접근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증분신계약비(incremental acquisition cost)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포함될 것이다.
- 부채의 측정과 부채와 연계되거나 관련된 자산의 측정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채 측정에 사용된 할인율이 자산의 기대수익률과 다른 경우 당기순익의 변동성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이익인식의 형태는 계약기간에 걸친 위험조정과 잔여마진의 배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 보험계약의 가격산정방법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 보험보장(insurance coverage)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비보험의무(non-insurance obligation)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와 (2) 개별적으로 수익인식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인 경우, 계약요소의 '분리회계(unbundling)'에 대한 규정은 수익인식 시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확률가중현금흐름, 관련 신계약비, (ED에서 정의한) 의무의 인식시점, 포트폴리오 측정을 위한 확률분포모형 및 적절할 할인율의 결정과 추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 제안사항
- 측정모형
- 측정모형 - 단기계약에 대한 단순화된 방법
- 계약의 경계(contract boundary)
- 임의배당요소(participating features)
- 정의와 적용범위
- 분리회계(unbundling)
- 재무제표 표시
- 공시
- 단위연계계약(unit-linked contracts)
- 재보험
- 경과규정과 시행일

IFRS in Focus is our new IFRS newsletter.

It replaces the IAS Plus Newsletter. IFRS in Focus provides key information and insights on recent accounting developments. We hope you find it informative and user-friendly. We welcome your comments and suggestions. Please send them to DTTGLOBALIASCO@deloitte.com. And don't forget, with over 11 million visitors, IAS Plus is the most comprehensive source news about IFRS on the Internet. Please check in regularly at iasplus.com

For more useful information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

www.iasplus.com

www.deloitte.co.uk

제안사항

2010년 7월 30일, IASB는 공개초안 ED/2010/8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이하 ED라고 함)을 발표하였다. 이번 ED는 IFRS 4 '보험계약'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IASB의 2단계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다.

보험계약 회계에 대한 프로젝트는 1997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IFRS 4 2단계 ED는 최종적으로 모든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 모두)에 일관된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2008년 10월, FASB가 이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IFRS 4 2단계는 급속히 진전되어 IASB와 FASB의 핵심 회계기준 정합(convergence) 프로젝트가 되었으며, FASB는 제안된 IFRS 모형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수 주일 내에 토론서 형태로 IASB의 ED를 발표할 예정이다.

IFRS 4 2단계의 개발과정에서 시장과 일관된 투입변수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현행가치기준(current value basis)으로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하는 제안사항은 현행 보험계약 회계처리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ED는 보험부채를 할인된 확률가중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discounted probability-weighted estimate of future cash flow)에 기초한 '구성요소(building block)' 회계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률가중추정치에 내재된 변동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IASB와 FASB가 심의과정에서 의견의 일치에 이르지 못한 분야로, ED에서 서로 다른 2가지의 측정방법을 제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측정모형 (measurement model)

ED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명시적인 '구성요소(building block)' 접근법을 사용한 측정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 section에서 측정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구성요소 1 – 미래현금흐름의 확률가중추정치

(Building block 1 - probability-weighted estimate of future cash flows)

첫 번째 '구성요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된 예상 미래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 즉 기대가치(expected value)로 정의된다. 계약기간에는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재인수(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하며,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완전하게 반영하여 보험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이는 계약의 경계(contract boundary)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는 제안사항에서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논의된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조건에 구속되는 시점(통상적으로 계약에 서명한 날)이나 보험자가 계약상 위험에 최초로 노출되는 시점(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빠른 시점에 최초로 인식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부채로 더 이상 적격하지 않을 때 제거된다.

논평

보험계약에 대한 최초인식의 원칙은 기존 IFRS와 부합한다. 왜냐하면,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의 시점은 통상적으로 계약에 서명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한다는 IFRS의 일반적인 개념과 일관성을 갖기 위해 제안사항은 보험자가 계약에 서명하기 전이라도 위험을 부담하는(on risk) 형태로 행동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준비(stand ready)가 되어 있다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취소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약속을 하는 경우에 상기에서 언급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에서 언급된 기준에 따른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회계시스템이 회계처리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위험에 처음으로 노출되는 시점(risk inception date)'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특히 손해위험(property and casualty risk)을 인수하는 일반 손해보험자들에 특히 공통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과정은 공정가치 개념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그 대신, 보험자 자신의의 전망을 반영해야 하며 기대가치기준(즉, 확률가중)으로 보험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현금흐름에는 증분신계약비(increme

ntal acquisition cost) 뿐만 아니라 보험료(premium), 비용, 급부금과 보험금 지출이 포함될 것이며, 유배당 보험계약(participating insurance contract)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부금(즉, 계약자 배당)도 포함될 것이다.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예를 들어, 이자율과 기타 시장자료)를 고려해야 한다.

상기 방법은 기업의 이행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행이행가치(current fulfilment value)' 접근법이라고도 한다.

논평

확률가중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시나리오 개발이 필요하며, 각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에 대한 기업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특정 확률을 각 시나리오에 할당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D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발생 가능한 다수의 시나리오를 포착하기 위한 확률모형(stochastic modelling)은 가장 신뢰성 있는 기대가치를 계산하는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현행 보험회계모형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형개발과 시스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측정모형에서 첫 번째 '구성요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실제로 판매된 개별 보험계약의 판매, 인수 및 체결활동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증분신계약비를 현금흐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증분신계약비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수준이 아닌 개별계약 수준에서 식별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증분신계약비가 아닌 신계약비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논평

첫 번째 '구성요소'에서 (실제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증분신계약비를 고려하는 규정은, 보험계약의 발행이 보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신계약비는 가격산정에 고려될 것이므로 최초 인식시점에서 보험부채는 일반적으로 수취한 대가(계약으로 인한 최초 현금유입은 통상적으로 선지급(upfront)형태로 지급된다)보다 작기 때문이다.

증분신계약비에 대한 축소된 정의와 새로운 모형에서의 역할로 인하여 보험자의 비용배분시스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요소 2 –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할인율

(Building block 2 - a discount rate to reflect time value of money)

ED는 보험부채의 특성(즉, 통화, 기간, 유동성 특성)을 반영하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금흐름을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또는 불확실성이 특정 자산의 성과에 의존(예: 유배당 계약)하지 않는다면, 할인율은 부채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assets backing the liability)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할인율은 비유동성 프리미엄(illiquidity premium)으로 조정된 무위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계약에서 연금의 지급은, 보험계약자가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연금이 지급되기 전에 또는 계약을 청산하기 전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현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유동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결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ED는 적용 가능하다면 할인율 및 할인율과 관련된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포함하여 중요한 가정을 선택하는 절차와 관련된 공시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행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는 최초인식시점에서 또는 후속적으로 보험자의 미이행위험(non-performance risk)이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충당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 사용된 접근법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사용된 방법과 유사하다.

논평

IFRS에 근거하지 않은 다수의 기존 회계모형에서는 보험부채의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 자산기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재무회계 개념체계(예: 미국, 캐나다 GAAP)에서는 보험계약상 현금흐름이 보험부채의 이행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자가 보험부채를 이행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에 연계하여 보험부채의 할인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사항은 명백한 연관성, 다시 말하면, 계약상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또는 불확실성이 특정 자산의 성과에 의존(예: 유배당 계약)하지 않는다면 부채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무배당 계약에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ED의 적용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최초 적용시점에 보험부채가 증가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자본이 감소할 것이다) 부채의 할인율에 반영될 수 없는 자산의 이자율 요소로 인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보험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보험자의 과거 관행과 보험계약이 특히 장기 계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당기손익의 잠재적 변동은 또한 보험자 자산의 가치변동이 보험부채의 가치변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보험부채의 특성을 반영하는 할인율을 사용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절차를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험자는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록 IASB에서 비유동성 프리미엄의 결정에 대한 방법론을 기술하지 않았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실무적 진전으로 재무보고에서 비교가능성이 감소되는 기간은 제한될 것이다.

구성요소 3 – 불확실성과 미래이익을 반영한 마진

(Building block 3 - a margin to reflect uncertainty and future profits)

ED는 보험계약의 현금흐름 변동성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다루고 있는 2가지 다른 모형에 대한 feedback을 요청하고 있다.

- 첫 번째 모형에서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보험자가 허용된 3가지 기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계산될 위험조정(risk adjustment)을 명시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기대가치와 위험조정의 합계로 측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회계이익은 잔여마진(residual margin)을 통해 포착되며 보험보장기간에 걸쳐 인식된다.
- 대체적인 모형에서는 추정의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측정(즉, 위험조정)하지 않으며, 그 대신 '복합마진(composite margin)'에 미래이익과 같이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포착한다. 복합마진은 지급되거나 수취된 실제 현금흐름과 기대가치의 비교에 기초한 공식을 사용하여 이익으로 배분된다.

각 접근법의 핵심 부분과 차이점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다.

마진의 구성요소	위험조정+잔여마진 (risk adjustment plus residual margin)	복합마진 (composite margin)
	다음 2가지 요소로 구성	단일 요소
'day 1' 손실과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회계이익을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위험조정(명시적으로 보고): 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실제 이행현금흐름이 기대현금흐름을 초과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급할 최대금액을 나타낸다.잔여마진: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서의 이익을 제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복합마진: 최초 인식시점에서의 이익을 제거하고 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이전된 보험위험의 불확실성을 인수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포착한다.

'day 1' 손실과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회계이익을 제거하는 계약의 기대현재가치에 대하여 잔여마진을 조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서의 회계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계약의 기대현재가치에 대하여 복

거하기 위한 조정	기대가치에는 위험조정을 포함한다.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생한 회계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합마진을 조정한다. 기대가치에는 위험조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 가산	최초 인식시점에서 기대가치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된 할인율과 동일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잔여마진에 이자를 가산한다.	복합마진에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적용 가능한 기법	위험조정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3가지 기법이 허용된다.	적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수준(confidence level, VaR) • 조건부 tail 기대치(conditional tail expectation, CTE/Tail-VaR) • 자본비용(cost of capital) 	
통합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조정은 '위험이 대체로 유사하고 단일의 pool로 공동 관리되는 계약의 집합'으로 정의되는 계약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전체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잔여마진은 계약개시시점과 보장기간의 유사성에 따라 포트폴리오 내의 계약을 결합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복합마진은 계약개시시점과 보장기간의 유사성에 따라 포트폴리오 내의 계약을 결합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후속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조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측정해야 한다. ('lock-out') • 잔여마진은 이자 가산을 제외하고 재측정하지 않아야 한다. ('lock-in') • 잔여마진은 보험보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당기손익에 배분될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마진은 재측정하지 않아야 한다. • 복합마진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보장기간과 보험처리기간이 결합된 기간에 걸쳐 배분될 것이다. <p>(당기 배분된 보험료+당기 보험금 및 급부금) / (계약상 총 보험료+총 보험금 및 급부금)</p>

논평

위험조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은 보험계약에 대한 가장 최근의 회계모형과 상당히 다르다. 일부 기존모형에서는 위험마진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보험부채의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한 계리적 기법(actuarial techniques)을 개발하는 것은 복잡하고 진행 중에 있는 실무적인 분야이다. 적절한 평가기법을 선택하고 올바른 통합수준을 정의하며 평가기법을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조정(calibrating)하는 것은, 후속적인 실행과 관리 측면에서 기업에 중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이익 인식형태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마진이 어떤 방식으로 기간배분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개별적이면서 상세한 자료(granular data)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은 부채와 당기손익 모두의 변동성을 감소시켜 분산

화 이익(diversification benefit)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함에 있어 기업에 경쟁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험부채에 대한 확률분포모형을 개발하고 사용된 가정을 적절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복합마진 모형이 선택된다면, 마진의 조정과 후속 배분을 위해 현행정보를 계약 개시시점에 설정하거나 각 보고기간에 갱신된 보험료와 기타 평가치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측정모형 - 단기계약에 대한 단순화된 방법

(Measurement model - Simplified approach for short-term contracts)

ED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는 보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된 2가지 단계, 즉 보험사건 발생 전(pre-claim)의 단계와 보험사건 발생 후(post-claim)의 단계를 통해 수행된다고 설명한다. 보험금 청구 전의 단계에서 회계모형은 '이행할 준비(st and ready)'에 대한 의무(pre-claim obligation)가 보험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다. 측정모형에 따라 보험사건 발생이 통지된 계약에 대해서 보험사건 발생후의 부채(post-claim liability)를 계산하고 모든 잔여마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구성요소' 접근법을 사용하여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상당수의 계약이 보험사건 발생 전의 부채(pre-claim liability) 단계에서 유사한 회계변동을 가지기 때문에, ED는 보장기간이 1~2개월 이내이고 옵션이나 추가적인 보증이 내재되지 않은 모든 계약에 대하여 간편법(shortcut method)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D는 이러한 단순화된 방법이 주된 측정모형('building block' model)을 간편하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지 보험계약에 대한 대체적 회계처리의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화된 방법에서는 최초 부채를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료(통상적으로 전액 선지급형태로 지급될 것이다)의 현재 가치에서 계약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증분신계약비(보험료와 동일하게 전액 선지급형태로 지급될 것이다)를 차감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채는 보험금 또는 급부금의 발생형태에 근거한 배분이 정액법(straight line basis)과 중요하게 다르지 않다면 후속적으로 기간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배분된다. 최초 보험사건 발생 전의 부채를 이익으로 배분하는 것은 단순화된 방법에서의 이익인식형태를 주된 모형에서의 이익인식형태와 일관되기 위함이다. 2가지 경우 모두 이익은 보장기간(1~2개월 이내)에 걸쳐 발생하며 보장기간 종료시점의 재무제표에 동일한 금액의 보험금 부채(claim liability)가 인식될 것이다.

보험사건 발생 후의 부채는 항상 3가지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측정될 것이고, 단순화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보험자는 이에 따라 보험금 부채를 측정할 것이다.

논평

단순화된 방법은 단기보장을 제공하고 조건이 단순한 모든 계약에 적용될 것이다. 미경과보험료(unearned premium) 방법의 사용에 대한 분석내용이 공시될 것이고 새로운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준수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적절한 이익인식형태를 결정하고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계약의 경계 (contract boundary)

ED가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던 개념적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안사항을 개념체계상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부합시키는 것이다.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무조건적이라고 간주될 것이며 의무 전부를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할 권리는 단지 보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강제된 범위 내에서만 자산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경제환경과 일관되지 않을 중요한 부채를 생성시킬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내재옵션을 포함하여 권리와 의무의 묶음(bundle)으로 계약을 고려하는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IASB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내재옵션은 계약의 일부이고, 측정모형에서는 첫 번째 구성요소의 측정에 이러한 내재옵션의 효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옵션이 측정에 고려되는 기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한정된다. 보험계약의 경계는 미래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장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로 해당 위험을 완전하게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나 실무적 능력이 있는 시점까지이다.

최근 발행된 수익인식 ED에서는 대가를 계약의 다른 요소에 배분함에 있어 옵션의 존재를 고려하도록 하는 상기와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IFRS 수익모형의 개념은 제공된 자산관리용역과 같은 비보험용역에 대한 평가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다.

논평

단순화된 접근법은 단기보장을 제공하고 조건이 단순한 모든 계약에 적용될 것이다. 미경과보험료(unearned premium) 방법의 사용에 대한 분석내용이 공시될 것이고 새로운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준수하고 있는지를 강조할 것이다. 적절한 이익유형을 결정하고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계약기준 접근법의 다른 중요한 영향은 ED가 보고기간 말에 권리와 의무의 묶음을 단일의 계정잔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구성요소 접근법에서 사용된 미래 순현금흐름의 추정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기대가치가 부채로 되기 전에 자산으로 반영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대부분의 현금유입이 미래에 분할 지급되는 장기평준식(long-term regular) 보험계약).

임의배당요소 (participating features)

ED에 도입된 계약기준 모형은 IASB가 임의배당요소의 회계처리라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보험자는 자주 보험계약자에게 보증금부금에 추가하여 중요한 부가금부금을 수취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이러한 부가금부금은 보험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결정된다. 그러나, ED에 따르면 임의배당요소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다음에 기초해야 한다.

- (i) 특정 보험계약의 집합 또는 특정 유형의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성과
- (ii) 발행자가 보유하는 특정 자산집합의 실현 그리고/또는 미실현 투자수익
- (iii) 계약을 발행하는 기업, 펀드 또는 다른 기업의 당기손익

현행 기준에서 보험자는 임의배당요소를 부채, 자본요소 또는 부채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D는 임의배당요소가 계약의 다른 조항과 매우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계약을 구성하는 요소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험자는 계약상 보증금부금에 추가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보상의 범위를 추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ED는 임의배당요소가 보험계약 및 보험위험을 이전하지 않는 금융상품 모두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상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금융상품은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 아닌 보험계약 ED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적용범위에 대한 결정은 IFRS 4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접근법과 일관성이 있다.

FASB는 US GAAP에 따라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금융상품 회계모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논평

임의배당요소 회계처리에 대하여 제안된 해결방법은 현행실무와 상당히 다른 분야에 적용될 것이다.

ED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근법이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특히 생명보험자의 경우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하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실무적용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보험계약자와 주주에 대한 예상 배분조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참가적 펀드(일부 국가에서 '상속자산(inherited estate)'이라고 알려져 있다)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분석하는 절차가 요구될 것이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잉여금의 분배는 보험부채의 일부에 포함될 것이나 주주에 대한 분배는 보험자의 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사가 긴 일부 참가적 펀드(일부는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에 포함된 규모가 크고 계층화된(stratified) 잉여금을 고려함에 있어 보험자는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잉여금의 분석을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계약자 잉여금 전액이 현재 부채로 분류되어 있다면, 주주의 유보이익에 잠재적인 '의외의 소득(windfall)'을 관리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준서의 채택과 그 이후의 회계처리 결과를 이해하는데 있어 적시성 있는 분석이 중요할 것이다.

ED는 또한 유배당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자산기준 할인율을 사용하는 규정
- 계약의 경계에 대한 규정을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내재된 취소 및 갱신 옵션에 적용
- 참가적 펀드(participating fund) 내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에 따라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의 잔여마진을 배분하는 규정

정의와 적용범위 (definition and scope)

IFRS 4 1단계는 IFRS에 따라 어떤 거래유형에 대해 각 국가의 과거회계실무를 계속 적용(grandfathering)하는 것이 유용할 것 인지를 투자자에게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실행 가능한 보험계약의 정의를 도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보험계약의 정의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ED는 다음 2가지의 제한적인 개정사항만 도입하고 있다.

첫 번째로 보험위험이 중요한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현재가치를 사용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는 이미 보험사건이 보험계약자의 생존인 보험계약에 이미 적용되었다. 왜냐하면, 생존시 지급하는 급부금과 그 외의 시점에 지급하는 기타 급부금(예: 해약가치)의 비교는 단지 생존시점에 지급하는 급부금의 현재가치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보험위험이 중요한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고려되는 시나리오는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이 있다. 시나리오가 상업적 실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모든 유입을 고려한 후 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명확화는 FASB가 IFRS의 보험계약 정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ED는 또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적용범위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1. 발행된 금융보증계약(issued financial guarantee contracts). 이러한 계약은 항상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현재는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된다. ED는 발행된 금융보증계약을 보험계약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유한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는 ED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보증의 보유자는 현행 회계정책에 따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계속 할 것이다.

2. 고정수수료 용역계약(fixed fee service contracts). 이러한 계약은 현재 IFRS 4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만, 제안사항에 따르면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분리회계 (unbundling)

IFRS 4 1단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분리회계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그 당시에 도달한 타협안에서는 보험자가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저축요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에만 분리를 요구하도록 상당히 제한된 지침이 제공되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조건은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상황은 드물게 발생한다.

ED는 계약요소가 보험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계약요소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D는 보험요소에서 투자요소와 서비스요소를 분리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분리가 요구되는 일반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a)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잔액(account balance)을 나타내는 투자요소
- (b)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주계약에서 분리하는 내재파생상품
- (c) 보험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상업적 실질이 없이 계약에 결합된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상 조건

ED는 상기 (a)에 해당되는 경우 순수 저축요소만 분리해야 하며, 저축요소와 관련된 모든 수수료와 부과금액은 (저축요소와) 결합된 계약의 보험요소 또는 다른 요소에 귀속된 것처럼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ED는 내재된 해약옵션이 일반적으로 주계약인 보험계약과 분리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ED는 통상적으로 해약옵션은 계약전체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계약요소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보험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논평

ED의 분리회계 원칙은 연금상품과 유니버설 생명보험상품(universal life products)에서 계정가치(accounting value)의 별도 회계처리, 보증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분리 등 생명보험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리회계 원칙은 보험계약의 정의 내에서 적용되며, 각 요소의 특성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개별상품 기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 표시 (presentation)

보험계약에 대한 측정방법의 개발 외에도 ED는 보험계약은 '요약마진(summarised margin)' 접근법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표시의 중요성 때문에 ED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특정 의견을 제공하도록 외부검토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본문에는 최소한 5개의 표시과목(lineitem)이 포함될 것이다.

- **보험계약 인수에 따른 마진(underwriting margin)** - 잔여마진을 보장기간에 걸쳐 배분함에 따른 이익과 보고기간 말 기대가치의 재측정과 관련된 위험조정의 변동을 포함한 위험조정의 배분에 따른 이익이 포함된다. 복합마진모형에서도 해당 항목에는 복합마진의 배분에 따른 이익이 포함될 것이다.
- **최초 인식시점에서의 이익과 손실(gains and losses on initial recognition)** - 구성요소 모형에서 음(-)의 잔여마진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식된 day 1 손실과 재보험구입에서 발생한 day 1 이익을 표시한다.
- **증분신계약비에 해당되지 않는 신계약비(non-incremental acquisition cost)**

- **경험치 조정과 추정치 변경(experience adjustments and changes in estimate)** - 기대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의 차이,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변경,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된 할인율의 변경 및 재보험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포함한다.
- **보험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interest expense on the insurance liabilities)** - 보험부채와 관련된 할인금액의 상각, 보험부채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한 투자의 결과와 같이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보험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단순화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미경과보험료 부채(unearned premium liability)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3가지 구성요소로 계산된 보험사건 발생 후의 부채(claim liability)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해 특정 항목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각각의 표시과목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표시가 요구되는 개별요소는 별도의 표시과목에 포함시키거나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시방법의 목적은 이익인식의 근거가 되는 구성요소의 주요 부분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기 위함이다.

논평

요약마진 접근법은 기존 IFRS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방법이며, 계약상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하는 '총 흐름(gross flows)' 표시가 사용되는 몇몇 회계실무가 존재한다. '내재가치(embedded value)'라고 알려진 보충적 보고는 생명보험자의 성과를 표시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일반 손해보험자에게 혼란 것은 아니다.

새로운 표시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계정원장과 이에 근거한 회계시스템의 체계화(codification)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실행계획의 후기 단계에서 표시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의 수행은 중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시 (disclosure)

제안된 공시원칙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ED가 제시한 원칙은 기업이 다음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재무제표에 인식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액
-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

또한, ED는 공시목적상 통합 가능한 최대수준은 IFRS 8 '영업부문'에서 정의된 보고 가능한 영업부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ED는 관련 수치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과 대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FRS 4 1단계의 규정과 달리 ED는 공시를 위한 양식을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ED는 보험계약 장부금액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변동내역표(roll forward table)에 포함될 개별 항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변동내역표는 각 구성요소의 변동을 표시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D는 위험조정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과 투입변수를 공시하고, 적절한 경우 위험조정과 이에 대응되는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D는 최장 10년 간의 보험사건 발생 후의 부채(post-claim liability)에 대한 보험금진전추이표(loss development table)를 작성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제안된 경과규정에서는 과거에 더 이를 정보가 공시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진전추이표에 표시되는 과거 정보를 5년으로 제한할 것이다. 이러한 경과규정의 적용으로 사실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자가 과거 5년간의 정보를 추가하여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10년 간의 보험금진전추이표 작성이 가능해 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공시대상 연수를 증가시키는 경과적 경감규정은 2005년부터 IFRS 4 1단계의 공시규정에

따라 이미 공시를 하고 있는 기존 보고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 IFRS 4 1단계에 따라 보고하고 있는 기업은 이미 2000년부터 소급하여 보험금진전추이표를 공시하였기 때문이다.

논평

ED는 IFRS 4 1단계의 공시규정을 중요하게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ED는 과거에 국가별 GAAP에서 요구되었던 것보다 공시수준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수준의 증가로 보험자는 자료를 입수하고 관리하는 방법, 시스템 능력 및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위연계계약 (unit-linked contracts)

ED는 단위연계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지분상품과 자가소유 부동산을 포함시키기 위해 공정가치선택권(fair value option)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IAS 32 '금융상품: 표시'와 IAS 16 '유형자산'의 일반원칙에 대한 이러한 예외는 IFRS 4 1단계에서 발생된 일부 회계불일치를 제거할 목적으로 허용된다.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예외는 특히 해당 금융상품이 현재 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하다(자기지분상품은 자본 자감으로 회계처리된다). 제안사항에 따르면, 자기지분상품이 단위연계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행자는 자기지분상품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ED는 미국과 캐나다 GAAP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일항목(single line)' 접근법에 초점을 맞춘 단위연계계약의 표시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재무상태표의 단일항목 내에 단위연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일의 수익 또는 단일의 비용 항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도 유사한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논평

해당 조항은 단위연계특성을 가진 보험계약과 금융상품 모두에 적용된다.

ED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는 회계불일치는 발행자의 종속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단위연계펀드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연결자산과 연결부채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계속해서 IFRS에서 인식을 금지하고 있는 자산으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보험 (reinsurance)

재보험계약자가 구입한 재보험은 ED에서 다루고 있는 유일한 보험계약자 회계처리이다.

전반적인 접근법은 보험계약에서 기술된 내용과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3가지 구성요소 접근법을 사용하여 재보험계약을 측정한다. 그러나,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3가지 특별 규정이 있다.

1. 재보험계약자(cedant), 즉 인수한 보험위험에 대한 보험을 구입하는 보험자는 재보험대상인 재보험된 위험과 현금흐름(재보험계약자가 재보험대상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수록 재보험자산은 더욱 증가한다)을 참고하여 구입한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효익을 측정한다.
2. 재보험계약에서 재보험계약자가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보다 더 작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day 1 이익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반대로 지급한 금액이 인식된 자산을 초과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재보험보장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잔여마진을 나타낼 것이다.
3. 구성요소 모형에 따라 요구되는 측정에 추가하여, 재보험계약자는 재보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될 기대손실(expected loss)을 반영하여 재보험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경과규정과 시행일 (transition and effective date)

ED의 의견수렴기한은 2010년 11월 30일이며, 2011년 6월에 최종 기준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IASB는 시행일 및 경과 규정 적용방법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할 목적으로 추후 별도의 의견제시를 위한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IFRS 9 '금융 상품'의 의무 적용(현재 2013년 1월 1일)과 동시에 적용하도록 시행일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IASB는 보험계약 IFRS의 의무 시행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로 늦추어 진다면 IFRS 9의 시행일 연기를 고려할 것이다.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시점에 보험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련의 조정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연신계약비 또는 사업결합이나 계약이전으로 취득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인식된 무형자산과 같은 모든 보험계약 관련 무형 자산을 제거하여 개시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 보유 중인 모든 보험계약은 구성요소 접근법을 사용하여 재작성한다. 재작성으로 인한 양(+)의 차이 또는 음(-)의 차이는 개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잔여마진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시점에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IFRS 4 1단계 경과규정과 유사하게 ED에는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를 채택하는 시점에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하고 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범주가 아닌 다른 범주로의 재분류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경과규정은 IFRS에 따라 보고하는 기존 기업과 최초채택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주요 연락처

IFRS global office

Global IFRS Leader – Clients and Markets

Joel Osnoss

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

Global IFRS Leader – Technical

Veronica Poole

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

Leader – Global IFRS Communications

Randall Sogoloff

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

IFRS centers of excellence

Asia-Pacific

Korea

이길우

kilwlee@deloitte.com (Tel: 02 6676 3980)

Hong Kong

Stephen Taylor

iasplus@deloitte.com.hk

Melbourne

Bruce Porter

iasplus@deloitte.com.au

Tokyo

Shinya Iwasaki

iasplus-tokyo@tohmatsu.co.jp

Americas

New York

Robert Uhl

iasplusamericas@deloitte.com

Montreal

Robert Lefrancois

iasplus@deloitte.ca

Buenos Aires

Fermin del Valle

iasplus-LATCO@deloitte.com

Europe-Africa

Brussels

Laurent Boxus

BEIFRSBelgium@deloitte.com

Copenhagen

Jan Peter Larsen

dk_iasplus@deloitte.dk

Frankfurt

Andreas Barckow

iasplus@deloitte.de

Johannesburg

Graeme Berry

iasplus@deloitte.co.za

London

Elizabeth Chrispin

iasplus@deloitte.co.uk

Madrid

Cleber Custodio

iasplus@deloitte.es

Moscow

Michael Raikhman

iasplus@deloitte.ru

Paris

Laurence Rivat

iasplus@deloitte.fr

Rotterdam

Ralph ter Hoeven

iasplus@deloitte.nl